

의안번호	제 14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임순묵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5년 2월 23일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임순묵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5. 2. 23.

발의자 : 임순묵, 박병진, 강현삼,  
김봉희, 임현경, 이광진,  
임희무

### 1. 개정이유

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‘재난’ → ‘재난관리’로 용어 통일(안 제7조)
- 나.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(안 제8조)
  - 1) 행정부지사 →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# 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없음
- 다. 협의 :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와 협의
- 라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재난업무”를 각각 “재난관리 업무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, “재난 업무”를 “재난관리 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“재난업무”를 “재난 관리 업무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<u>재난업무</u> 담당국장</p> <p>2. 분임 기금운용관 : <u>재난업무</u> 담당과장</p> <p>3. 기금출납원 : <u>재난업무</u> 담당사무관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재난관리 업무</u> --</p> <p>2. ----- <u>재난관리 업무</u> --</p> <p>3. ----- <u>재난관리 업무</u> -- 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위원장은 <u>행정부지사</u>가 되고, 부위원장은 <u>재난업무</u> 담당국장이 된다.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⑦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<u>재난업무</u> 담당사무관이 된다.[제6항에서 이동&lt;2015. 1. 1&gt;]</p>	<p>제8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<u>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</u> <u>재난관리 업무</u> ----- -----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----- ----- <u>재난관리 업무</u> ----- -----.</p> <p>-</p>